

#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일시 | 2015. 11. 13 (금) 오전 09:30~12: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1호)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프로그램

### 가. 개요

- ▣ 일 시 : 2015. 11. 13.(금) 오전 09:30 ~ 12:00
-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1호)

### 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발 표 자
09:30	개 회	사회: <b>김성준</b>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09:30~10:00	실태조사 결과 발표	<b>최천규</b>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원)
10:00~11:00	토 론 (각 15분)	<b>정영선</b>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권현영</b>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b>이우창</b>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
		<b>김사옥</b>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
11:00~11:5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11:50~12:00	마무리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차 례

## 실태조사 결과발표

● 최천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원) ..... 3

## 토 론

●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3

●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43

● 이우창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 ..... 49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실태조사 결과발표

▼ 최천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Ⅰ 최천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원)

### 제1장 문제의 인식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초 및 응용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은 고도의 학술연구 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2014년 현재 총 1,209개 대학원에 총 33만872명의 대학원생들이 재학하고 있다.<sup>1)</sup>

대학원과정을 통해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은 2014년 현재 총 9만5천7백 36명으로 이중 석사학위 취득자가 전체의 86.49%(82,80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13.51%(12,931명)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sup>2)</sup> 그러나 고도의 전문화된 학문탐구를 위한 대학원생들의 증가추세라는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원생을 둘러싼 열악한 연구환경 및 지원, 인권문제 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문연구의 최고봉에 있는 지도교수와 제자와의 관계에서 갑을관계(甲乙關係)라는 학문적 종속관계가 암묵적으로 관행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도교수 및 관련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과 사건·사고들은 고도의 학술을 연마하고 미래의 지도자적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sup>3)</sup>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인분교수 사건’은 우리 사회를 경

1) 교육부 교육통계(<http://www.moe.go.kr>) 자료

2) 교육부 교육통계(<http://www.moe.go.kr>) 자료

악에 빠뜨릴 만큼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sup>4)</sup>

대학원생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성희롱·성추행, 언어적·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다.

## 제2장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인권

### 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환경이란 개체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적 조건과 요인의 총체로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귀섭, 1993). 물리적 환경이란 유형적 환경으로 주로 지리적인 환경이나 생태학적 환경을 뜻한다. 반면에 사회적 환경이란 해당 학습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환경이란 학습자에게 긍정적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된 외적인 조건과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정원식, 1984). 학습자의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연구실 환경, 준거집단의 환경 및 사회환경 등 모두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이다. 특히 학교환경이나 연구실 환경, 준거집단의 환경 및 사회환경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있어서 연구환경에 대한 논의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학습자의 성장 및 발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왔다(김용주, 1989). 심귀섭(1993)의 논문에 의하면 C. R. Pace(1969)는

- 3)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1,48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2012년에 1,380명에 대한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발표한 「2014년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수나 동료간의 관계에서 논문저작권 문제, 성희롱/성추행, 넓은 의미의 폭력, 넓은 의미의 차별, 교수 개인업무 수행, 개인적 접대나 선물 부담, 연구비 유용 문제,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4) 2015년 7월에 밝혀진 사건으로 경기도의 K대 J모 교수가 자신의 체자에게 각종 폭행뿐만 아니라 인분을 먹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인권침해 사건.

#### 4\_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대학(대학원)의 환경을 구성원, 전통, 정책,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구성원의 태도·가치·지각 및 참여와 논쟁점, 그리고 이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L. L. Baird(1980)는 대학(대학원)의 환경을 구성원, 절차, 그리고 물리적 조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지운(1984)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학(대학원)의 환경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비롯한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재 구성요인들의 상호작용적 영향의 총화라고 정의해 보다 포괄적이며, 광의의 연구환경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R. T. Hartnett(1976)는 대학원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학원 학과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보다 소극적이면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의 연구환경에 대한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원의 연구환경은 대학원의 구성원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사회적·물리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절. 대학원생 인권

대학원생의 인권에 관한 권리의 구분은 헌법 및 기타 하위법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내대학의 관련 전문교수의 자문의 언어 대학원생의 인권과 관련된 파생권리는 <표 2.1>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2.1> 헌법의 일반적인 권리와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파생권리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파생권리
기본적인 권리	기본 권리	
○ 헌법 제 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을 추구할 가치 - 인격권 -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 인격권
○ 헌법 제 11조	- 평등권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남녀고용평등권	- 평등권 -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파생권리
기본적인 권리	기본 권리	
○ 헌법 제12조 1항	- 신체의 자유 - 인격권	- 신체의 자유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권
○ 헌법 제19조	- 양심에 관한 권리	-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헌법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	- 연구결정권 - 연구성과 명의권
○ 헌법 제31조 1항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교육(학습) 받을 권리	- 학습권
○ 헌법 제34조 1항, 2항, 6항 ○ 헌법 제35조 1항	- 인간존엄에 관한 권리 - 복리후생에 관한 권리 - 안전에 관한 권리	- 복리후생권 - 안전권

### 3절.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과 인권 현황

#### 1. 연구환경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연구환경 실태를 법제도적 기반, 경제적 여건, 연구 및 학업 지원, 인권 상황 등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하면 대학원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자적인 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대학원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점은 대학원이나 대학원생의 법적 지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며, 결국 대학원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제가 미흡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면 30.1%의 학생들이 부모나 배우자 등의 지원에 의존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외국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 경제적 자립을 당연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학생들은 대

학원의 학비나 생활비 등의 대부분을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형편상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원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장학금 혜택도 매우 적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대학원생들은 상대적 고소득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일시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학업지원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연구 공간이 아직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81). 비교적 연구환경이 양호하다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도 연구실 확보에 대한 불만 응답자가 만족 응답자의 두 배가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최근에는 노동과 휴식이라는 일상적 생활공간 외에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설 지원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공간의 예로는 일시보육시설, 아이동반 연구공간, 어린이집, 가까운 유축 공간, 수유 공간, 기저귀 교환대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구비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83).

## 2. 인권 현황

대학원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 주된 계기는 2011년 이후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보도된 것이라고 할 만큼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2015년 7월 경기도 K대의 J모 교수에 의해 자행된 제자에 대한 폭언, 폭행, CCTV를 통한 감시뿐만 아니라 ‘인분’을 먹이기까지 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보여줘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인분교수’라 칭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대학원생들의 인권문제가 더 이상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의 부당한 인권침해 행태를 각종 언론에서는 ‘슈퍼 갑 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갑질’로 비하하여 표현하고 있다.

대학원생의 종합적인 인권 상황은 2014년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부당처우 경험자가 45.5%에 이르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개인존엄권(성희롱이나 각종 폭력 등) 침해가 31.8%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경험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석사보다는 박사 과정이 각각 11%와 13%씩 높았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4).

같은 해 실시된 서울대학교의 실태조사에서는 1,384명 중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35.9%가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7.3%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월등히 개선된 것이었다(서울대 인권센터, 2015 : 52). 이러한 경향은 고려대의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도교수에 의한 인권침해나 논문 관련 비리에 관한 질문에서 78%의 학생들은 그런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 34-35). 이런 결과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의 인권 상황이 여타의 대학들에 비해 훨씬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절. 국내 대학교의 인권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성희롱, 성폭력, 폭언 및 폭행, 논문대필 등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일부 대학교(대학원) 등에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학교가 2000년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2012년에 인권센터(<http://hrc.snu.ac.kr/>)로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대가 비슷한 시기 인권센터(<http://humanrights.cau.ac.kr/>)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카이스트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윤리센터(<http://humanrights.kaist.ac.kr/>)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국대도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몰카 없는 캠퍼스를 위한 전수조사’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이들 기관들은 모두 부속 시설로 운영되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교원으로 할 경우 독립성이 일부 훼손될 수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 외 서강대, 강원대, 포스텍, 한양대 등에서도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2〉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대학의 운영 현황

구분	서울대학교	중앙대	카이스트	동국대학교
명칭	인권센터	인권센터	인권윤리센터	인권센터
설치년도	2012년	2012년	2014년	2015년
설치근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직제규정에 의거	직제규정 인권센터 규정
조직구성	인권상담소,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3개 운영위원회	단일	단일 (인권위원회)
상시인원	7명	5명	3	3명
센터장 신분	학내 교원	학내 교원	학내 교원	학내 교원
온/오프라인 상담유무	○	○	○	이메일
자체 홈페이지	○	○	○	준비 중
최근 3년간 상담건수	2013년(1,774) 2014년(1,225) 2015년8월 현재(1,006)	.	상담센터에서 이관되어 이전 통계정리 미흡	.
전화번호	02-820-2421	02-820-6907	02-350-1212	02-2260-3649

## 제3장 대학원생 연구환경과 인권실태 분석결과

### 제1절 일반사항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① 실태조사 설문설계를 위한 사전검토 및 정량조사(설문조사)설계과정 ② 심층인터뷰와 세미나 등 정성조사과정 ③ 인권위원회의 협조과정 ④ 자문 및 분석과정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표본의 크기는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방법별 응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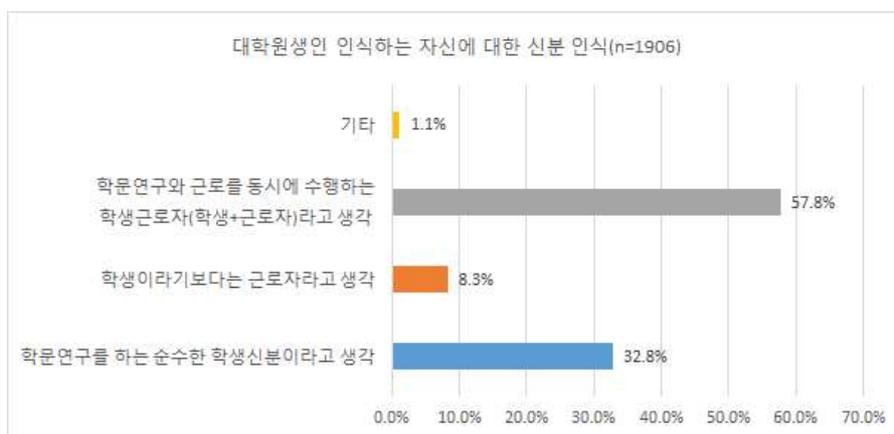
실태조사 방법		일시 (기간)	응답자 또는 참여자 수
정량조사 (설문조사)		2015.06.08.-06.22 (15일간)	1,906명
정성 조사	대학원생 국제세미나	2015.06.04	24명
	표적집단심층면접(FGI)	2015.06.27	7명
		2015.07.24	4명
	유학생 심층인터뷰	2015.06.20.-07.20	4명

## 2절. 연구환경

### 1. 재학유형과 신분인식

설문조사에 응답한 1,906명의 대학원생들의 재학유형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87.1%에 해당하는 대학원생들이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2.9%는 파트타임(비전업제) 대학원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즉 신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을 학생근로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7.8%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근로자로 인식하는데 따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3.2 참조). 2014년에 발표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도 58.2%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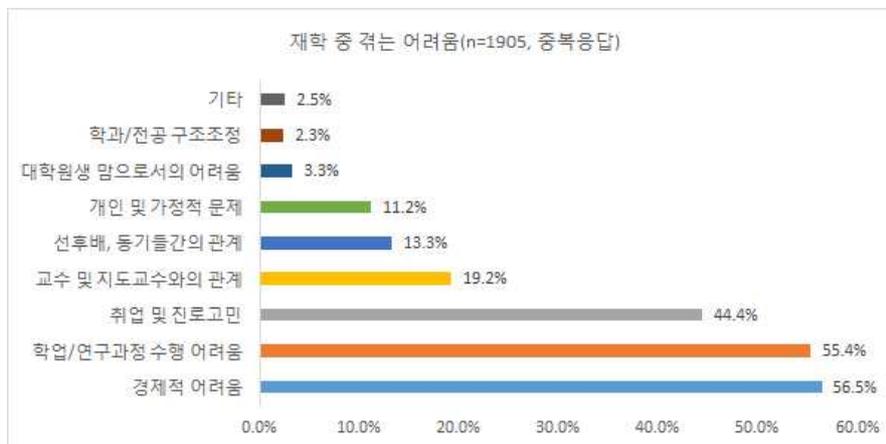


〈그림 3.1〉 대학원생들의 자기신분에 대한 인식

## 2.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26.9%)과 학업/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연구과제의 경우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인적 특성 외에 환경적 요소가 강한 속성으로 대학원생들에 대한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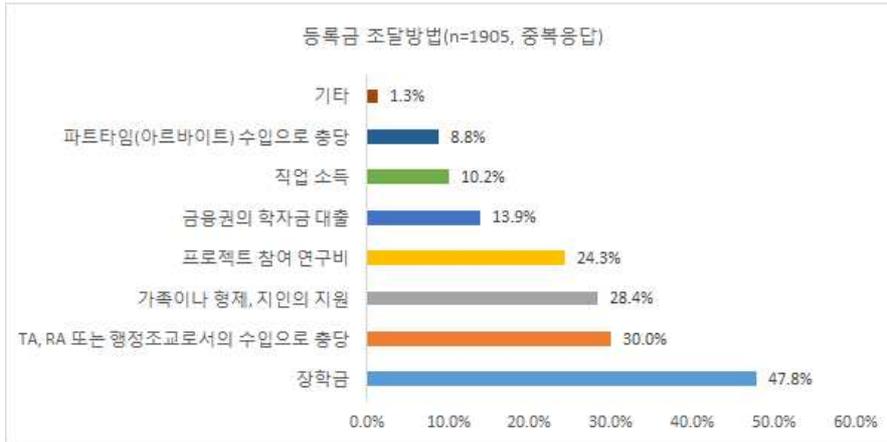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취업 및 진로고민(21.1%),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9.1%), 개인 및 가정의 문제(6.4%),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6.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중복응답 기준)

## 3. 등록금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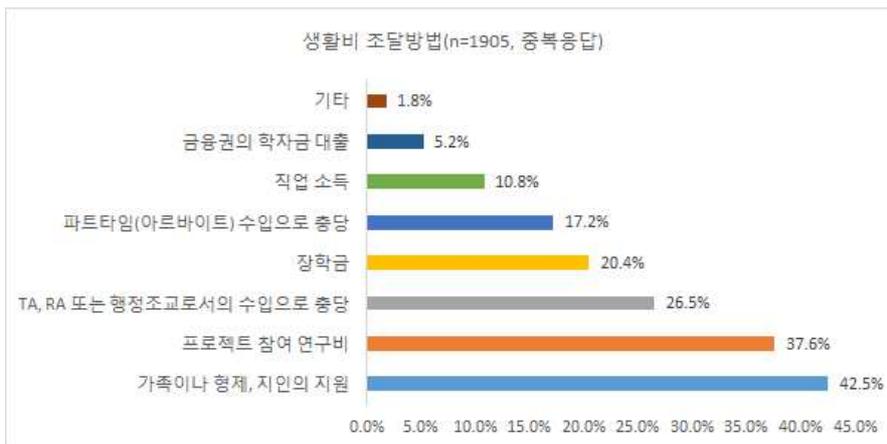
대학원생들이 등록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장학금에 의한 경우가 4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교수입,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3〉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조달 방법(중복응답 기준)

#### 4. 생활비 조달 방법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가족, 지인의 지원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경우, 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장학금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조달방법(중복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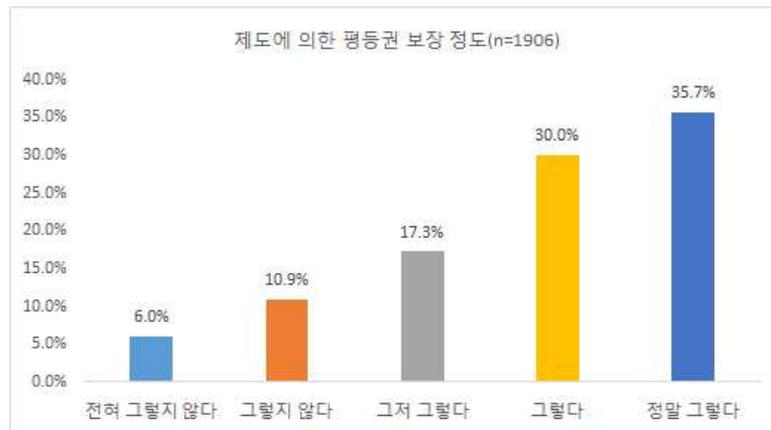
### 3절. 인권실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측정문항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대학원생 인권에 관한 파생권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헌법에 기초하여 파생된 대학원생 인권은 ①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학습권 ③ 복리후생권 ④ 안전권 ⑤ 연구결정권 ⑥ 사생활보호권 ⑦ 연구성과 명의권 ⑧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⑨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⑩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등 총 10가지의 권리로 분류하였다.

#### 1. 평등권

##### 1.1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

대학원생들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이나 학비지원의 공평성에 대한 분석결과, 65.7% 정도의 응답자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믿는 응답자도 17% 정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3.5〉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에 대한 인식

## 1.2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대학원생들의 평등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권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는가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Low2 퍼센트 비율이 평등권이 보장되는 비율이다. 조사대상 대학원들은 교수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출신학교로 인해 차별 받지 않으며(88.4%), 나이/외모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는 것(91.0%)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상/신념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으며(93.8%), 출신지역/종교/장애 등으로 인해서도 차별 받지 않는 것(94.2%)으로 나타났다.

〈표 3.2〉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350	335	126	66	29	1685	95	1906
	행 N %	70.8%	17.6%	6.6%	3.5%	1.5%	88.4%	5.0%	100.0%
(교수)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13	323	112	41	17	1736	58	1906
	행 N %	74.1%	16.9%	5.9%	2.2%	0.9%	91.1%	3.0%	100.0%
(교수)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93	294	75	26	18	1787	44	1906
	행 N %	78.3%	15.4%	3.9%	1.4%	0.9%	93.8%	2.3%	100.0%
(교수)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음	빈도	1501	294	72	27	12	1795	39	1906
	행 N %	78.8%	15.4%	3.8%	1.4%	0.6%	94.2%	2.0%	100.0%

## 1.3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선후배나 동료들에 의한 평등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Top2퍼센트)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선후배나 동료들간에도 평등권이 보장(Low2 퍼센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마인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350	335	126	66	29	1685	95	1906
	행 N %	70.8%	17.6%	6.6%	3.5%	1.5%	88.4%	5.0%	100.0%
(교수)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13	323	112	41	17	1736	58	1906
	행 N %	74.1%	16.9%	5.9%	2.2%	0.9%	91.1%	3.0%	100.0%
(교수)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93	294	75	26	18	1787	44	1906
	행 N %	78.3%	15.4%	3.9%	1.4%	0.9%	93.8%	2.3%	100.0%
(교수)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음	빈도	1501	294	72	27	12	1795	39	1906
	행 N %	78.8%	15.4%	3.8%	1.4%	0.6%	94.2%	2.0%	100.0%

## 2. 학습권의 보장

### 2.1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습권의 보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제도적이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Top2 퍼센트)가 6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FGI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3.4〉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제도)장학금,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수입이 없으면 학업계속이 어려움	빈도	115	208	330	572	681	323	1253	1906
	행 N %	6.0%	10.9%	17.3%	30.0%	35.7%	16.9%	65.7%	100.0%

## 2.2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교수에 의해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 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34.5%(Top2 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음	빈도	386	710	461	258	91	1096	349	1906
	행 N %	20.3%	37.3%	24.2%	13.5%	4.8%	57.5%	18.3%	100.0%
(교수)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했음	빈도	669	646	285	217	89	1315	306	1906
	행 N %	35.1%	33.9%	15.0%	11.4%	4.7%	69.0%	16.1%	100.0%
(교수)논문의 연구 주제 선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음	빈도	498	624	299	108	49	1122	157	1578
	행 N %	31.6%	39.5%	18.9%	6.8%	3.1%	71.1%	9.9%	100.0%
(교수)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음	빈도	116	256	297	230	123	372	353	1022
	행 N %	11.4%	25.0%	29.1%	22.5%	12.0%	36.4%	34.5%	100.0%
(교수)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적이 있음	빈도	377	304	172	103	66	681	169	1022
	행 N %	36.9%	29.7%	16.8%	10.1%	6.5%	66.6%	16.5%	100.0%
(교수)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음	빈도	211	450	672	365	208	661	573	1906
	행 N %	11.1%	23.6%	35.3%	19.2%	10.9%	34.7%	30.1%	100.0%
(교수)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음	빈도	123	215	259	296	131	338	427	1024
	행 N %	12.0%	21.0%	25.3%	28.9%	12.8%	33.0%	41.7%	100.0%
(교수)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음	빈도	91	172	321	316	119	263	435	1019
	행 N %	8.9%	16.9%	31.5%	31.0%	11.7%	25.8%	42.7%	100.0%
(교수)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은 적이 있음	빈도	633	319	51	14	3	952	17	1020
	행 N %	62.1%	31.3%	5.0%	1.4%	0.3%	93.3%	1.7%	100.0%

### 2.3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학습권과 관련하여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후배 등에 의해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3.6〉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선후배)집단 따돌림에 의해 꼭 필요하거나 원했던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빈도	520	237	65	29	10	757	39	861
	행 N %	60.4%	27.5%	7.5%	3.4%	1.2%	87.9%	4.5%	100.0%
(선후배)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해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적이 있음	빈도	392	251	120	61	38	643	99	862
	행 N %	45.5%	29.1%	13.9%	7.1%	4.4%	74.6%	11.5%	100.0%
(선후배)압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였음	빈도	1091	580	156	60	19	1671	79	1906
	행 N %	57.2%	30.4%	8.2%	3.1%	1.0%	87.7%	4.1%	100.0%
(선후배)지시한 업무로 학업에 지장을 받았음	빈도	999	499	240	127	41	1498	168	1906
	행 N %	52.4%	26.2%	12.6%	6.7%	2.2%	78.6%	8.8%	100.0%
(선후배)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	빈도	354	261	144	66	39	615	105	864
	행 N %	41.0%	30.2%	16.7%	7.6%	4.5%	71.2%	12.2%	100.0%
(선후배)동료로부터 요청받은 일은 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음	빈도	955	482	256	154	59	1437	213	1906
	행 N %	50.1%	25.3%	13.4%	8.1%	3.1%	75.4%	11.2%	100.0%

### 3. 복리후생권의 보장

대학원생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도 대학원생에 대한 복리후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제도 모두 대학원생들에 대한 복리후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복리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복리후생권에 대한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환경)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음	빈도	387	547	556	357	59	934	416	1906
	행 N %	20.3%	28.7%	29.2%	18.7%	3.1%	49.0%	21.8%	100.0%
(환경)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음	빈도	1071	516	273	40	6	1587	46	1906
	행 N %	56.2%	27.1%	14.3%	2.1%	0.3%	83.3%	2.4%	100.0%
(제도)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음	빈도	752	555	523	67	9	1307	76	1906
	행 N %	39.5%	29.1%	27.4%	3.5%	0.5%	68.6%	4.0%	100.0%

### 4. 안전권의 보장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에서 연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혹은 대학원에서 학습할 때 안전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분석결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21.2%(Low2 퍼센트)로 나타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 안전권 보장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환경)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음	빈도	152	253	625	660	216	405	876	1906
	행 N %	8.0%	13.3%	32.8%	34.6%	11.3%	21.2%	46.0%	100.0%

### 5. 연구결정권 보장

연구결정권을 보장하는 2개 문항 모두에서 연구결정권이 침해(Top2 퍼센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도 역시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연구결정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음	빈도	630	578	327	243	128	1208	371	1906
	행 N %	33.1%	30.3%	17.2%	12.7%	6.7%	63.4%	19.5%	100.0%
(교수)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받고 있음	빈도	258	345	234	124	64	603	188	1025
	행 N %	25.2%	33.7%	22.8%	12.1%	6.2%	58.8%	18.3%	100.0%

### 6. 사생활보호권의 보장

교수나 선후배 등에 의해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FGI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정해진 시간 외에 갑자기 연락하거나 급하게 일을 시키는 등의 사생활 침해를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시간에 각종 서류처리와 행정처리를 시키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작더라도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나 선배들의 마인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사생활보호권 보장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음	빈도	1342	314	132	78	40	1656	118	1906
	행 N %	70.4%	16.5%	6.9%	4.1%	2.1%	86.9%	6.2%	100.0%
(선후배)결혼 및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음	빈도	1411	317	93	50	35	1728	85	1906
	행 N %	74.0%	16.6%	4.9%	2.6%	1.8%	90.7%	4.5%	100.0%

## 7.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전체적으로 교수와 선후배 등에 의해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을 그다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성향이 아직도 대학원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FGI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성과의 도용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 도용은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인드 혁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음	빈도	706	643	339	161	57	1349	218	1906
	행 N %	37.0%	33.7%	17.8%	8.4%	3.0%	70.8%	11.4%	100.0%
(교수)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당한 경우가 있음	빈도	602	327	72	13	9	929	22	1023
	행 N %	58.8%	32.0%	7.0%	1.3%	0.9%	90.8%	2.2%	100.0%
(교수)학술지 게재논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 받음	빈도	562	280	103	41	35	842	76	1021
	행 N %	55.0%	27.4%	10.1%	4.0%	3.4%	82.5%	7.4%	100.0%
(선후배)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공동저자나 제1저자 등으로 등재되지 못함	빈도	374	277	111	65	36	651	101	863
	행 N %	43.3%	32.1%	12.9%	7.5%	4.2%	75.4%	11.7%	100.0%
(선후배)동료에 의해 아이디어, 논문(리포트)등 도용당한 경우가 있음	빈도	501	245	72	32	13	746	45	863
	행 N %	58.1%	28.4%	8.3%	3.7%	1.5%	86.4%	5.2%	100.0%
(선후배)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논문에 올리도록 강요 받음	빈도	431	224	102	65	41	655	106	863
	행 N %	49.9%	26.0%	11.8%	7.5%	4.8%	75.9%	12.3%	100.0%

## 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대학원생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침해사례는 대체적으로 교수에 의한 경우가 선후배에 의한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관계에서 교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음	빈도	1558	256	53	30	9	1814	39	1906
	행 N %	81.7%	13.4%	2.8%	1.6%	0.5%	95.2%	2.0%	100.0%
(교수)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 받았음	빈도	1470	298	86	31	21	1768	52	1906
	행 N %	77.1%	15.6%	4.5%	1.6%	1.1%	92.8%	2.7%	100.0%
(교수)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252	306	158	116	74	1558	190	1906
	행 N %	65.7%	16.1%	8.3%	6.1%	3.9%	81.7%	10.0%	100.0%
(교수)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음	빈도	1353	324	138	53	38	1677	91	1906
	행 N %	71.0%	17.0%	7.2%	2.8%	2.0%	88.0%	4.8%	100.0%
(교수)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음	빈도	1597	249	37	15	8	1846	23	1906
	행 N %	83.8%	13.1%	1.9%	0.8%	0.4%	96.9%	1.2%	100.0%
(교수)성적으로 차별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366	299	125	89	27	1665	116	1906
	행 N %	71.7%	15.7%	6.6%	4.7%	1.4%	87.4%	6.1%	100.0%
(교수)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음	빈도	1482	287	66	52	19	1769	71	1906
	행 N %	77.8%	15.1%	3.5%	2.7%	1.0%	92.8%	3.7%	100.0%
(교수)성(性)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546	280	51	19	10	1826	29	1906
	행 N %	81.1%	14.7%	2.7%	1.0%	0.5%	95.8%	1.5%	100.0%
(선후배)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음	빈도	1447	349	66	36	8	1796	44	1906
	행 N %	75.9%	18.3%	3.5%	1.9%	0.4%	94.2%	2.3%	100.0%
(선후배)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받았음	빈도	1459	324	88	23	12	1783	35	1906
	행 N %	76.5%	17.0%	4.6%	1.2%	0.6%	93.5%	1.8%	100.0%
(선후배)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333	337	105	90	41	1670	131	1906
	행 N %	69.9%	17.7%	5.5%	4.7%	2.2%	87.6%	6.9%	100.0%
(선후배)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음	빈도	1349	322	145	59	31	1671	90	1906
	행 N %	70.8%	16.9%	7.6%	3.1%	1.6%	87.7%	4.7%	100.0%
(선후배)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음	빈도	1543	290	53	11	9	1833	20	1906
	행 N %	81.0%	15.2%	2.8%	0.6%	0.5%	96.2%	1.0%	100.0%
(선후배)성적으로 차별, 희롱 또는 음담패설을 들었음	빈도	1402	351	72	58	23	1753	81	1906
	행 N %	73.6%	18.4%	3.8%	3.0%	1.2%	92.0%	4.2%	100.0%
(선후배)성(性)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534	289	58	16	9	1823	25	1906
	행 N %	80.5%	15.2%	3.0%	0.8%	0.5%	95.6%	1.3%	100.0%

FGI 분석결과에서도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토로했는데, ‘임신하면 지도교수한테 혼난다.’라든가 ‘빛을 내서 학교를 다니라.’, ‘배신자’, ‘현실 부적응자’라는 표현 등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사제지간에 오고갈 수 있는 대화나 언어가 아님에도 이러한 언어폭력으로 인해 많은 대학원생들이 인격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인격권,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시급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대학원은 학문도야를 위해 이루어진 공간이다. 학문의 성과는 논문이나 기타 연구 성과를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대학원생들에게 있다. 따라서 공정한 심사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인권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는 있으나 교수 개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논문심사를 못 받거나 지도교수의 변경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특히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연구 성과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교수 변경의 용이성은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음	빈도	68	165	397	643	308	233	951	1581
	행 N %	4.3%	10.4%	25.1%	40.7%	19.5%	14.7%	60.2%	100.0%
(교수)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686	596	207	65	21	1282	86	1575
	행 N %	43.6%	37.8%	13.1%	4.1%	1.3%	81.4%	5.5%	100.0%
(교수)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음	빈도	1059	380	93	24	9	1439	33	1565
	행 N %	67.7%	24.3%	5.9%	1.5%	0.6%	91.9%	2.1%	100.0%
(교수)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음	빈도	455	489	321	216	89	944	305	1570
	행 N %	29.0%	31.1%	20.4%	13.8%	5.7%	60.1%	19.4%	100.0%
(교수)지도교수 변경의 용이하였음	빈도	6	5	5	4	7	11	11	27
	행 N %	22.2%	18.5%	18.5%	14.8%	25.9%	40.7%	40.7%	100.0%

##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부당한 일을 지시 받은 경우는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나 교수에 의한 부당지시가 9.7%(Top2 퍼센트)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과도한 선물 등의 압력도 약 5%이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거나 대응행동에 대하여 자유응답에 의해 정성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 하거나 특별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학 내에 공식적인 기구 - 예를 들어, 인권센터 등 - 를 만들도록 의무화 해 인권의식이 대학(대학원)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14〉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학점, 장학금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 등 압력 받음	빈도	1187	468	163	60	28	1655	88	1906
	행 N %	62.3%	24.6%	8.6%	3.1%	1.5%	86.8%	4.6%	100.0%
(교수)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대학원생 명의 도용을 지시받았음	빈도	493	314	117	63	36	807	99	1023
	행 N %	48.2%	30.7%	11.4%	6.2%	3.5%	78.9%	9.7%	100.0%
(선후배)부당한 연구비 유용, 명의 도용을 지시받았음	빈도	519	239	58	30	12	758	42	858
	행 N %	60.5%	27.9%	6.8%	3.5%	1.4%	88.3%	4.9%	100.0%

## 제4장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 1절. 총론적 정책방향

최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대학원 운영 경력이 반세기 남짓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나 인권에 관한 제도와 인식, 관행 등의 측면에서 아직 기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론적 수준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교육 정책에서 대학원 교육에 관한 별도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학부 수준의 교육과 분리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 차원에서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 및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轉機)가 마련되어야 한다.

### 2절. 핵심정책 제언

당면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 1.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현재 대학원의 지위는 독립적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대학의 한 부속기관이다. 종합대학이라는 체제에서 불가피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대학원의 행정 기능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1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대학원을 추가한다.

(※ 단, 대학과 대학원을 별도의 학교로 분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병설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

- 제언 2 :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대학은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대학원이 독립적인 교육기관임을 명시하고,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를 제2절에서 빼내어 별도의 ‘대학원’이라는 절로 독립시킨다.

## 2.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

현재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원 학사 운영이나 대학원생 복지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없거나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연구공간의 미비와 함께 대학원생들이 학교로부터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필요한 지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전담 행정지원 기구의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3 : 모든 대학원에 학부와 분리하여 대학원 행정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와 대학원 행정을 통합 운영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 3. 대학내 상호인권 존중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도제식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교수들은 아직도 학생을 대등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일을 시켜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은연 중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어떤 의례적 절차와 의무가 준 강제적 형태로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4 : 모든 대학(원)에서 교수와 학생의 상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쌍무적 협약식을 거행하고 그 결과로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그것이 나름의 강제력을 가진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운용한다. 또한 매년 상담건수와 처리결과를 유관 부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원생을 위한 인권 개선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책수립의 일관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관련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조사와 통계분석,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정기적인 실태조사

대학원생 인권 문제는 2011년 카이스트 대학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이후 대중적 주목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반복된 실태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러한 효과를 영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5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및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정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가급적 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된 항목에 대하여 모듈화 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개발하도록 한다.

#### 5. 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는 대학이다. 하지만 대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주된 이유는 재정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교수들이 주도하는 대학 내 정책에서 학생 권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평가가 나름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5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학평가 항목에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인권 상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대한 차등 지원에 반영한다.

## [참고문헌]

### □ 국내 문헌자료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연구환경개선투쟁 〈대학원생 실태보고서〉.
- 국가청렴위원회(2006. 2). 박사학위과정 비리 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국민권익위원회(2012년 10월).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 김병주·최손환·서지영(2005).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교육행정학연구* 23(4) : 321-342.
- 김성열 외(2014).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내용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용주(1989), *한국대학원의 학술환경 평가연구*, 「연세교육과학」.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2014. 10.).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2015년 7월).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
- 심귀섭(1993), “교육대학원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장덕호(2013). 대학원생들의 연구관련 성과 변인들의 차이 분석 :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젝트와 두뇌한국21 사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3 pp.20-27.
- 정우진·김경연·조보경·이영미(2008). 제2단계 BK21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교육행정학연구* 25(4) : 435-453.
- 정원식(1984),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 □ 외국 문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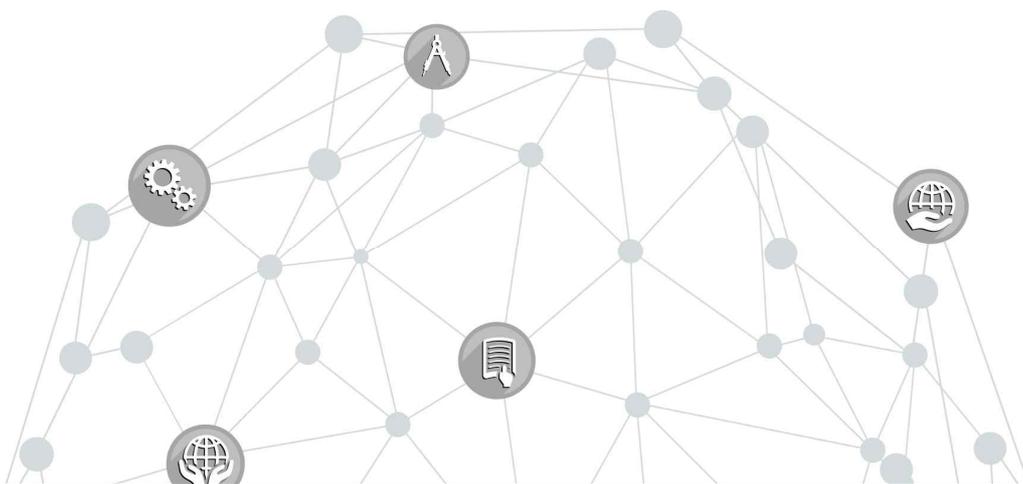
- Bognanon, M. F. & Suntrup, E. L.(1976). Graduate assistants' response to unionization : The Minnesota experience. *Labor Law Journal*, 27(1), 32-37.
- Daniel J. Julius와 Patrica J. Gumport(2003). Graduate Student Unionization : Catalysts and Consequenc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6(2), Winter 2003, pp. 187-216.
- Gary Rhoades and Robert A. Rhoades(2003). The Public Discourse of U.S. Graduate Employee Union : Social Movement Identities, Ideologies, and Strategi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6(2) Winter 2003, pp. 163-186.
- Robert A. Rhoades and Gary Rhoades(2005). Graduate Employee Unionization as Symbol of and Challenge to the Corporatization of U.S. Research Universiti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3), May/June 2005, pp. 243-275.
- Singh, Parbudyal, Deborah M. Zinni, and Anne F. MacLennan(2006). Graduate Student Un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abor Research* 27(1): 55-73.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토론

- ▼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 이우창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





##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에 대한 인권적 고찰

Ⅰ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논의를 시작하며 - '대학원생'이라 쓰고 '노예'라 읽는다!

대학원생은 정녕 '노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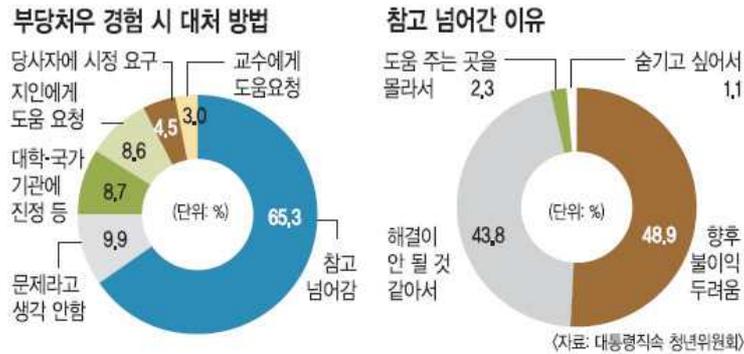
대학원생은 교수나 기존 학자들을 도와 연구를 진행하는 예비 연구자이자 때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연구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대학원생들 각자는 특별한 꿈이 있어서 학위 과정에서 공부하거나 보다 나은 조건으로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하여 대학원을 다닌다. 예전에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하기 바빠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친 박사학위자들마저 '넘쳐난다'고 표현이 되는 정도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것은 이처럼 대학원생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에 대한 열악한 연구 환경과 그로 말미암은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교수에게 종속되는 수준이나 착취당하는 내용이 '현대판 노예'라 할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하고, 그 동안 쉬쉬하며 숨겨왔고 굶아있던 상처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상당한 보수와 조건을 향유하며 연구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적지 않아서, 대학원생을 '노예'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 계기는 최근 들어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2015년 7월 경기도 K대 교수 장모씨에 의해 자행된 대학원생 제자에 대한 폭언, 폭행, CCTV를 통한 감시뿐만 아니라 '인분'을 먹이기까지

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몰아넣기도 하였다.<sup>1)</sup>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인분교수’라 칭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우리 사회에서 대학원생들의 인권문제가 더 이상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의 부당한 인권침해 행태를 각종 언론에서는 ‘슈퍼 갑 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갑질’로 비하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을 ‘노예’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전국 14개 대학의 대학원총학생회가 전국 2354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5%(1071명)가 교수로부터 언어·신체·성적 폭력이나 차별, 교수 개인의 사적 노동, 저작권 편취 등 부당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지만, 정작 그중 65.3%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서’(48.9%)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sup>3)</sup> 유형별로는 개인존엄권(성희롱이나 각종 폭력 등) 침해가 31.8%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경험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석사보다는 박사 과정이 각각 11%와 13%씩 높았다. ‘인분교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응당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심지어 학위논문 심사 거마비로 50만~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장씨는 결국 학교측으로 부터 파면됐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피해 대학원생은 장씨가 교수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학계 권위자였기에 장씨의 학대를 참아왔다고 토로했다.  
 2) 하지만 같은 해에 실시된 서울대학교 실태조사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보다 낮게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35.9%가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7.3%였다. (서울대 인권센터, 2015 : 52). 이러한 경향은 고려대의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도교수에 의한 인권침해나 논문 관련 비리에 관한 질문에서 78%의 학생들은 ‘그런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 34-35). 이런 결과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학생 인권 상황이 여타의 대학들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국민일보 2015.10.8.>



## 2.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과 관련된 인권 현황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조사(이하 ‘연구보고서’)에서는 논의된 다양한 측정문항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대학원생 인권에 관한 파생 권리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헌법에 기초하여 파생된 대학원생 인권을 ①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학습권 ③ 복리후생권 ④ 안전권 ⑤ 연구결정권 ⑥ 사생활보호권 ⑦ 연구성과 명의권 ⑧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⑨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⑩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등 총 10가지의 권리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인권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연구 분석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4)</sup>

먼저, 대학원생의 평등권 문제이다. 연구보고서는 대학원생들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의 공평성 있는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구비 등의 엄격한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차별과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은 대체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다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수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수뿐만 아니라 선후배나 동료들의 미미한 정도지만, 평등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2015. pp.138-158; 166-181 참조.

둘째, 학습권 보장 문제이다. 대학원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습권의 보장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평가한 결과, 국·공립대학의 대학원 보다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이 국·공립 대학교보다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수에 의해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① 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② 조교 업무 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 ③ 프로젝트 연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④ 프로젝트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⑤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 ⑥ 특정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등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될 당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 내에서 교수들에 의한 학습권 피해사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후배 등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그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연구기간내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원생들간에 불신감을 조장하여 더욱 심각한 행위(폭력 등)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복리 후생권 문제이다. 대학원생들의 복리후생권은 무엇보다도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학원생맘’(mom)으로 불리는 여학생을 위한 모유수유실과 휴식공간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출산 및 보육지원정책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넷째, 안전권 문제이다. 대학원생들이 학교의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정권 침해 문제이다. 대학원생의 연구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①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② 프로젝트에 참여를 강요 받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수들에 의해 대학원생들의 연구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대학원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노력은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 등 철학에 의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사생활보호권 문제이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원생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는 선후배에 의한 경우보다 교수에 의해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수들이 더욱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일곱째, 연구 성과 명의권(名義權)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생들이 연구논문 발표나 다른 유사한 성과를 냈을 때, 연구 성과에 대한 명의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 성과에 대한 명의권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대학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제출된 리포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서나 연구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자신의 연구 성과로 둔갑시키는 것이므로 ‘도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도용을 당연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 도용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여덟째, 인격권 문제이다. 교수들에 의해 대학원생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특수관계에서 교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대학원생들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하고, 특히 특별한 연구 성과나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교수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다. 단지 교수와 제자 사이라고 해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근절되어야 한다.

아홉째,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이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학원생이 적시에 논문 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심사위원 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변경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문제이다. 대학원에서 대학원생과 교수와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특수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수에 의한 부당한 지시를 대학원생이 거부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에서 제기한 열 가지 권리 침해 유형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권리들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권리이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유형 중의 하나는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학생이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해당 대학원생을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연구 프로젝트를 운용할 경우, 교수는 연구를 도와주거나 직접 진행하는 대학원생에게 해당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원생은 자신의 이름이 연구 프로젝트에 포함되거나 관련 연구나 실험에 동원될 때는 응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대학원생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그러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받아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특히 이과생의 경우)이 상당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미 학부를 졸업하였고, 대개 취업을 해서 자립적 경제생활이 요구되는 연령대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는 곧 자기 삶을 영위하는 기초 수단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대학원생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응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편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나중에 이러한 '불법적' 행각이 발각 되어 구속되는 교수들도 해마다 몇 명씩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sup>5)</sup>

### 3. 대학원생 연구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방향

독립적 인격체를 강조하는 외국의 대학원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은 교수에 대한 종속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군사부일체’를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강조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도제식 문화가 아직도 상당히 잔존하는 이 시대에, 약자의 입장에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교수들을 향하여 감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감이 있는 소리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연구보고서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대학원생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이 제도적으로 인권센터를 두고 있어도 학생이 직접 상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인권 침해를 알아채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는 당사자의 사과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고 한다. 제도적 장치로도 넘지 못할 장벽이 곧 교수의 태도와 인식이니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고 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인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권리 주장이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보고서에서도 제안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제정 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sup>6)</sup> 이미 몇몇 대학에서 권리장전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권 침해를 막을 수

5) 대학원의 연구실 모델은 전공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수 한명에 여러 학생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또는 실험실) 중심 모델과 교수·학생 일대일 관계가 중요한 도제식 모델이다. 몇몇 연구실은 학생통장을 직접 수거해 관리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분배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 보상이 관리되고 있지만, 해당 교수들이 그런 환경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이다.

6) 2014년 10월에는 카이스트가 국내 대학원 중 처음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했고, 같은 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전국 14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내놨다. 2015년 8월에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권리장전과 학업연구 근무지침 권고안 가안을 냈다.(연합뉴스, 2015.8.6.) 경희대는 2015년 10월 6일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수·학생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대학원생의 개인 존엄권과 자기 결정권, 학업 연구권, 저작권, 근로권 등을 보장하고 대학의 연구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국민일보, 2015.10.7.)

있는 제도적 장치로 모든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협약 방식에 의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도제식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당수 교수들은 여전히 대학원생을 대등하고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시켜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은연 중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강제성을 띤 제도적 절차와 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수와 학생간에 상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쌍무적 협약식을 거행하고, 일종의 연구 윤리 관련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한다.<sup>7)</sup> 아울러 그것이 나름의 강제력을 가진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감시기구(예를 들면 인권센터 등)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sup>8)</sup>

하나의 좋은 사례로, 2015년 8월에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권리장전과 학업연구 근무지침 권고안 가안이 있다. 권고안은 대학원생이 대학원 및 관련기관의 업무를 할 때 소속 기관 관리자로부터 근무시간, 기간, 내용, 대가금의 지급시기와 방식 등 근무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조교근무 등을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고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학생과 협의 없이 사전에 제공한 내용을 근무 기간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sup>9)</sup> 또한 권고안에는 휴식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근무시간과 대가 등은 최저생활비를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 대학원생의 근무에 대한 대가와 장학금은 구별해서 분리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모든 대학원생은 이런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각 단과 대학원 내 설치된 고충처리시스템이나 인권센터에 고발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 내에 고충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7) 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을 강화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교수와 대학원생만이 아니라 제3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권리장전이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 이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과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9) (연합뉴스, 2015.8.6.)

## 4. 맺으며

학문 후속세대이자 미래의 학자로 성장하는 대학원 수학 과정은 숭고하고 영예로운 길이다. 그런데 현황은 녹록치가 않다. 학문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고된 삶을 견디어 나가고, 주변에 산재해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를 극복해 가야만 하는 험준한 행로이다. 대학원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30대 시절을 좁은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지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 성과 산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 또는 가족을 책임지는 경제적 부담도 아울러서 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대학원생이란 자신의 전공 영역을 심화시켜 나가며 그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해 나간다는 ‘미래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연구 활동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경제적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더구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그 좌절감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 한 것은 대학원생들을 착취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하는 교수들 역시 그들도 험난한 대학원생 시절을 겪어 왔다는 점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짓밟힌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한, 대학원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연구 활동을 유지해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 학문의 주인공 세대인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 교육권, 참여권, 노동권 등이 연구 기간 동안 불합리하게 훼손되거나 비참하게 침탈되지 않도록 건전한 대학원 연구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먼저 관련 대학 교수의 태도와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될 경우,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그 맨 앞에 상대적 ‘강자’들인 교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나서야 할 것이다. 상대적 ‘약자’인 대학원생들도 도제식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와 주위 구성원의 격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문을 선도하는 교수와 가까운 미래의 학문 발전을 책임질 대학원생들 간의 상생을 기대해 본다.



#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Ⅰ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귀한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된 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교수의 충격적인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한 이번 실태조사 연구는 매우 시의성 있고, 또한 우리 대학원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현장 지향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몇 가지 화두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족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1. 대학원 문화를 보는 시각

- 대학원 문화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
  -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유교적 가치관
  - 도제식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관행화
  - 학문적 지위·성장, 직업 등에 있어서 지도교수의 역할과 입지가 절대적인 구조적 특수성
  -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아 온 대학원 문화의 권력적 속성
  - 폐쇄적·수직적 성격의 대학원 문화, 학문의 자유 등 강한 배타성
- 대학원 문화 선진화에 사회전반의 관심이 증대
  - 최근 대학원생에 대한 성범죄, 폭행·폭언·모욕, 연구비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사

회문제가 되면서 학교는 점차 불신의 대상으로 변모

- 그간 대학원 문화 선진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자정노력이 충분했는가?
- 변화와 혁신 없는 구태한 구조로 글로벌 학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 2. 대학원생 연구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 ○ 대학원생의 인권사각지대의 유무와 정도

- 대학원생에게 인권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군대나 교도소, 초중등학교, 노동현장 등 인권분야의 전통적인 관심을 받는 곳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
- 대학원생에게 인권사각지대가 존재할 경우 이것이 국가수준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인가?
- 학생 스스로의 선택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대학원생은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서 보호되는 것과 본인의 인권적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였는가?
- 그리고 그 선택이 강요된 것인지, 그 상황에서의 탈피는 불가능한지?

### ○ 제도의 불비 또는 미흡의 문제인가?

- 제도가 불비하거나 미흡해서 대학원생의 연구환경보장이 어려운가에 대한 반문
- 대학원의 연구, 프로젝트, 학업과 관련된 제도는 민형사법령 및 행정법령 뿐 아니라 학칙 등 자치규정에 대체적으로 갖추어진 경우가 대부분
- 문제는 결국 제도의 취지나 가치가 현장에서 구체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 ○ 실제로는 대학원생이나 교수, 학교 등이 인권과 처우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과 자세가 부족한 문제는 아닌지 반문해봐야

### 3.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과 대학원 문화선진화를 위한 검토의 틀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제도개선을 바라보는 틀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개입 가능여부, 수준으로부터 출발
  -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입의 비교형량
  - 종교에 대한 국가개입이나 사회개입과의 비교
  -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려면 학생이 누려야할 인권 침해의 수준이 국가의 개입 없이는 그 보장이 어려운 수준이어야
  
- 학교와 학문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국가개입이 극도로 자제되어야 바람직
  - 자칫 학내 인권 등에 대한 역량강화의 기회를 놓치고 자체 대응 능력을 가질 시기를 놓치면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
  - 이런 측면에서 학문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동체 스스로가 해결하는 메카니즘과 문화조성이 시급
  
- 위 틀에서 볼 때 제도개선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
  - ① 불법행위 또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이 명확한 영역
    - 국가와 제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불합리한 관행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
      - \* 예컨대 학생에 대한 (성)폭력행위, 연구·노동의 대가 유용·횡령 등
  - ② 학문공동체의 자율적인 자정노력과 역량강화가 필요한 영역
    - 학문의 자유, 대학원 문화의 구조적 특수성과 지도교수 각자의 지도방식과 재량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의 당부를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영역
    - 학생의 인권·처우개선과 국가·제도개입의 정당성을 쉽게 예단하거나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영역

## 4. 제도개선의 방향

- 먼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영역의 문제는 그 주체를 막론하고 강력한 조사와 처벌강화를 통해 나쁜 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
  - 교육당국의 감사·조사권한을 확대하고, 형사사법권과의 상시 협업·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대학협의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학칙 등 자치규정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불법에 대한 자치대응의 표준화를 시도
  - 학교 내 또는 학교협의회, 당국 등에 온·오프라인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문공동체의 자율적인 자정노력과 역량강화가 필요한 영역은 학내 구성원의 자체대응 능력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이 영역에 대하여 처벌이나 규제적 방식 등 국가·제도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연구 및 후학양성이라는 학문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
  - 더불어 불합리한 관행의 음성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따라서 규제적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문화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전략이 바람직
  - 대학원생의 연구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등록금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과 대우 등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장려하면서,
  - 학교, 학생, 교수, 당국 등 공론체를 통해 합리적 지표나 요건을 설정하고, 중병된 우수사례를 포상하여 홍보하거나 이를 근거로 대학에 각종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부여하면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
  - 이 과정에서 학교와 당국의 홍보강화는 인식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기재가 될 것

- 대학협의회, 교내·외 교수협의회, 교내·외 학생자치조직, 교육·인권당국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대학원 문화 선진화를 위한 공론장 마련이 필수
  - 대학원 제도의 관계주체들이 각자 또는 함께 관련 문제를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과 관심의 조성이 현재 가장 필요한 사항
  - 학생과 교수, 학교가 참여한다는 등의 형식적인 자율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우수한 연구와 질적으로 높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활발한 연구와 공론과정이 필요
  
- 대학원생의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대학원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자율규제체계 마련이 담보되어야
  - 위 관계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구나 분쟁해결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한가?
  - 학내 대학원생 처우와 인권개선을 담당할 보직·조직을 총장직속 등으로 강력하게 신설하고, 자율 지표의 설정을 통해 학내 학과 간 및 대학원 간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는 학교 내 자구책도 고민 필요
  - 원우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식도 고민 필요



##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학생 측) 발제

Ⅰ 이우창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

### 1.

최근 온라인 상에서 유행하는 표현 중 ‘구조맹’(構造盲)이라는 단어가 있다. 김동춘은 “구조맹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인과의 고리로 연결된 하나의 구조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회를 언제나 개개인의 잘못이거나 지도자의 인격의 문제로 보는 태도”라고 설명한다.<sup>1)</sup> 하나의 사태에 작용하는 다양한 제도적, 비제도적 결정요인의 뒤얽힘을 풀어내는 대신 이 모든 것을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문제로 미루어버리는 구조맹적 시선은 현상의 이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해롭기까지 하다. 유감스럽게도 구조맹적 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원생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교수-학생 혹은 선후배 사이의 위계적인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권리침해, 대학원생의 삶과 학업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장학금 및 조교수당, 학위 취득 이후에 가증되는 진로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학원생들을 기다리는 것은 높은 확률로 개인들의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며 자신들은 달리 해줄 게 없다는 의사결정권자들의 답변이다. 어떻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보다 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혹은 애초에 어떤 점에서 문제제기가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된 “관료주의적” 답변을 받아든 대학원생들은 물러서지 않을 경우 자신이 모난 돌로 취급되리라는 사실을 재빠르게 알아차린다. 그들은 부조리에 적응하거나, 유학을

1) 김동춘. 「구조맹(構造盲)에서 벗어나자」. 다산포럼 칼럼. 다산연구소, 2015년 2월 24일.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bid=b33&page=&ptype=view&idx=5763>. 접속일 2015년 10월 30일.

떠나거나, 최악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다.

구조매적 사고방식과 관료주의가 융합한 단단한 벽을 넘고 대학원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곧 대학원생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가능할까? 본 발제에서는 이를 위한 돌파구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는 대학원생 문제를 개별 대학원생의 권리침해여부만이 아니라 교육연구환경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인권 및 기본권의 담론이 근래에서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감안할 때<sup>2)</sup> 대학원생 신분에서 어떤 권리가 결부되어 있다는 사고나 심지어는 권리의 개념 자체가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아직도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대학원생의 권리침해가 부분적으로 연구환경의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됨을 감안할 때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연구환경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연구환경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라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대학원생의 기본권을 이 주제의 일환으로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한다. 대학원을 구성하는 세 주체를 상징하고 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지를 논의한다. 세 주체란 먼저 미시적인 층위에서 대학원을 구성하는 교수-학생, 대학원 연구교육공간 자체이기도 한 대학원 행정당국,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의 교육연구정부기관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구도설정은 한편으로는 미시적이고 비제도적인 단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거시적인 단위에서 출발해 양자의 한 가운데에 놓인 대학원 행정당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장점이 있다. 본 발제에서는 이러한 구도 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들을 제시한다.

2) 예컨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2001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주요 연혁란 참조([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1\\_4.jsp](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1_4.jsp)). 서구의 경우 자연권(natural rights) 개념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8세기에는 자연권과 시민권이 긴밀하게 결합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2.

대학원 교육연구환경에서 합리성의 제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표현에는 대학원생 문제를 이해하는 특정한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대학원 행정을 이해하는 통상적인 시선에 따르면, 대학원 문제란 정상적인 교육연구시스템에서 예기치 않게 비정상적인 개인—성품에 문제가 있는 교수, 원만한 해결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등—이 출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탈적인 사고다. 비정상적 개인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에 제도 운영자는 오로지 현재의 시스템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러한 개인이 출현하지 않기만을 소망할 따름이다. 이러한 사고는 변수의 통제를 포기하고 제도 운영자에게 완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도 개선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대학원 교육의 주기능이 학적 지식의 생산 및 지식생산자/연구자의 재생산이라면, 대학원의 역할은 이러한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를 통해 최적화된 ‘생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대학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일탈적 개인이라는 통제불가능한 변수의 산물이 아닌 제도가 만들어낸 체계의 기능부전으로 설명한다. 대학원생 문제는 교육연구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상’으로, 오작동 요인을 찾아내어 시스템의 기능부전을 해결하는 것이 대학원의 의무가 된다.

오늘날 만연한 대학원생의 권리침해는 이러한 모델에 입각할 때 단순히 대학원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원 제도 혹은 대학원 연구환경 생태계의 작동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원생A가 충분한 학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침해에 불만을 품고 학업을 중도포기 한다면, 이는 그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유감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원의 연구환경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을 함축한다—비유하자면 전염병의 출현이 검역체계 상의 결함을 의미하듯 말이다. 대학원생의 기본권을 교육연구환경의 역량 혹은 건강함과 연결시키는 것은 세 가지 강점을 갖는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모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원 문제를 초월적인 사건이 아닌 제도적/비제도적 변수의 통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천재지변의 반복을 관조하는 대신 문제의 합리적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환경의 개선이라는 수사가 권리의 수사보다 좀 더 광범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10여 년 간 빠르게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해오는 방향으로 전진해왔지만, 또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권리의 언어 자체에 대한 반감과 피로감이 증대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난민, 이주노동자의 권리, 나아가 인권의 언어에 대한 적대감이 계속 해서 표출되고 있음을 보라). 이는 대학행정에 참여하는 교수집단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원생의 기본권 주장이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의 사고가 아니라 대학원생의 철없는 이기심으로 매도되곤 하는 현실은 교수 대 대학원생이라는 비생산적인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연구교육환경의 개선이나 ‘정상적인’ 연구교육환경의 요건과 같은 수사들은 대학원생의 기본권을 포함하면서도 전술한 반감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인 장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의 권리보장이 연구교육환경의 일부로서 제시될 때 실질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짚어둔다.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대학원생의 기본권이 그 자체로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측면과 교육권 정도를 제외하면 대학원생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곤 한다. 교육연구환경의 질적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본권의 논리만으로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 주제들을—예컨대 조교고용이나 진로설정 등—비교적 수월하게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원과 고등교육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단적으로 지난 20여 년 간 대학원생의 수가 4배 가까이 증폭했으나 교원충족, 논문지도, 학문연구공동체 형성, 학위취득자의 고용문제 등 양적 팽창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제도적 고민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으며, 이는 (대학원생의 미래이기도 한) 교수집단의 노동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 대학원 제도 합리화과정의 일부로서 대학원생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되 역으로 후자를 토대로 전자의 목표가 공통의 문제의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구도에서 두 문제의식의 상호참조는 각자의 설득력을 제고하는 일종의

되먹임(feedback)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3.

대학원 행정당국 및 이를 구성하는 제도가 대학원 연구환경 및 대학원생 기본권 개선에서 중점적인 논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학생들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지침 제시 및 평가를 수행한다면 대학원 행정당국은 제도 그 자체이다. 지적인 작업이 자율성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근대 대학의 패러다임이 유지되는 한 대학원 연구교육의 중심추가 교수집단 및 대학행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나 대학원 문제의 가장 고전적인 유형인 교수-학생 간의 ‘갑을관계’를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각 대학원 행정당국이다. 대학원 행정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본 발제에서는 그중에서도 교수-학생 간 문제 발생 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및 전문적인 대학원 행정조직의 확충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연구소 보고서의 집단면담(FGI)에서 토로되었듯 교수-학생 간 문제발생 시 대학원생측이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에 있다. 현재 대다수 학교의 대학원 행정기구(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권한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설령 징계심의기구(기구)에 대학원생의 피해사례가 접수된다고 해도 심의과정이 전적으로 교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이상 사안 자체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적어도 학생들은 그렇게 인식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리라는 ‘합리적인’ 두려움이 더해지면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이른바 “인분교수” 사태에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착취와 학대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권리침해상황을 호소할 기구가 부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로부터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대학원 행정당국은 교수-학생 혹은 선후배 갈등과 같이 강력한 위계질서로부터 비롯되는 갈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보유해야 한다. 위계질서의 약한 측에 있는 대학원생이 교수 및 선배와의 갈등을 혼자서 처리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sup>3)</sup> 둘째, 그러한 전담기구의 운영, 심의, 징계과정에서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수

및 학생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느 한 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원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적인 심의 인력의 도입 혹은 심의구성원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다.

앞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제 위에서 이를 해결하는 기구를 이야기했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학원 행정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기구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FGI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대체로 대학원 행정이 학부 행정의 부속물로 간주된다. 이는 고등교육/연구기관으로서 그 작동방식을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및 장학사업, 산학협력 등 다양한 학내외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오늘날의 대학원 행정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이다. 해당 학계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을 대학원 행정에 투입하는 미국 대학의 사례와 비교할 때 아직 한국의 대학원 행정은 그것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인식에도 미달한 듯 보인다. 이는 (수료 이후 연구생 신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대학원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및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더러 산학협력과정에서 종종 관찰되듯 결국 대학원생 및 교수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증대된 업무 부담이 다시금 대학원생의 삶의 질 및 연구환경을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문화된 대학원 행정기구의 설치는 중요하다.

#### 4.

대학원 연구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미시적이고 적은 권력을 보유한 단위, 즉 대학원생 측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중 하나는 권리장전 협약 추구하고 같은 실천을 통해 대학원생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실효적인 구속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그 침해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아직 자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권 및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한

3) 영미의 대학원에서는 교수-학생 간 문제발생 시 중간에서 양자의 직접적인 접촉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가 존재하며, 이 절차는 당연히 양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본 발제 첫 페이지에 인용된 논평자의 발언은 매우 당황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에서 대학원생의 권리에 대해 실제로 학교와 학과에 따라, 심지어는 동일한 학과전공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인식이 존재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적으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자녀의 입시교육지도에 동원되는 사례의 경우, 교수A는 절대로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지만 B는 (사실상 학생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수를 지불하며 학생을 동원하고, C는 아예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학생을 동원한다고 할 때 B와 C가 자신의 지시가 대학원생 노동을 사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은 흔하다. 권리장전 협약과 같이 대학원생의 기본권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은 교수와 학생의 인식수준에 따라 ‘인격의 지배’가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양자의 역할 및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불가결하다.

2015년의 시점에서 권리장전 체결이 점차 대학원 내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두자. 미국의 대학원에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상당히 널리 퍼진 용어가 되었으며, 우리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같은 검색키워드에 9,700,000건 가량의 검색결과가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5년 10월 30일 기준). 주목할 지점은 권리장전의 도입이 미국 대학만의 흐름이 아니라 2014년 10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총학생회의 권리장전 선언 이후로 한국의 대학원 풍경에서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 발표와 같은 시점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14개 대학 총학생회와<sup>4)</sup> 함께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이후 2015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 보고서에서는 대학원생 권리장전 권고안을 제시한다.<sup>5)</sup> 같은 해 10월 초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 선언」을 발표했으며<sup>6)</sup>, 10월 말 현재 포항공과대학(POSTECH) 역시 대

4) 참여한 대학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다: KAIST, 포항공과대학(POSTECH),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5)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사업 연구팀.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88쪽. 동 보고서에는 2012년과 2014년의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권리장전 권고안을 포함하여 각종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다.

(<http://hrc.snu.ac.kr/aboutus/notice.php?bm=v&bbsidx=1643>), 접속일 2015년 10월 31일

학원생 권리장전 선언을 앞두고 있다.<sup>7)</sup> POSTECH의 사례에서처럼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작성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라는 공적 기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홀로 대학원 행정당국과 협상하면서 교섭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대학원 학생회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다. 권리장전 협약을 통해 대학원생의 기본권을 확정하고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무교육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때 대학원생 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 언어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적어도 제도적인 층위에서나마)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권리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권리는 제도적 실천의 정당성 혹은 부적절함을 가려낼 근본적인 척도를 제공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약한 이의 몫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거의 갖추지 못한 대학원생 집단이 붙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개념적 도구다. 대학원생 집단은 한편으로 권리의 내용을 다른 대학원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다른 한편으로 권리의 언어를 바탕으로 (3절에서 언급한) 대학원 행정당국의 제도개선을 추구하고 나아가 제도 자체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 현장이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는 평가지표들로 격변하는 와중 대학원생 연구환경의 질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한층 더 절박하다.

## 5.

한국의 교육행정당국, 즉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은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시간강사고용문제를 포함해 대학 및 대학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듯 이러한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교육행정당국은 국공립대의 총장선출에서부터 대학평가와 재정지원결정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한을 보

6)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http://www.khugsa.com/>)의 게시판-공지사항 란을 참고하라. 접속일 2015년 10월 31일.

7) POSTECH 대학원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의 해당 게시물을 참조하라(<https://www.facebook.com/PostechGSA/posts/555094434654297>). 접속일 2015년 10월 31일.

유, 거의 모든 대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고등교육은 실상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띤다. 이들의 권한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표현은 아마도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일 것이다. 바꿔 말해 교육행정당국은 각 대학원 행정당국에게 제도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따라서 아직까지 수많은 대학원 및 교수집단에서 대학원 연구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 및 유관기관을 통한 제도 개선 촉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지다. 대학원생 기본권 및 연구환경 개선과정에 있어 신속한 법제화가 쉽지 않은 문제의 경우 행정적 개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단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및 미래부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학과/연구실에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섬세한 보완책을 곁들일 때 교수 및 학과의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sup>8)</sup>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역시 교육부의 대학(원)평가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원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평가를 통해 각 대학원에 차등화된 등급부여를 하고 이를 각종 재정지원에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9)</sup> 교육부 대학원 평가의 타당성 및 효용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제한다면, 평가기준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연구환경이 반영될 경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대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원생 인권과 관련된 각종 기준이나 대학원 거버넌스에서 대학원생의 의사반영수준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8) 가령 2012년 서울대학교 모 연구실에서 발생한 선후배간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 연구실의 지도교수가 가해자에게 연구실 내에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다른 지도학생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사례를 상기하라. 책임회피를 기능케 하는 현황은 다 시금 연구실 내의 위계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9) 2014년 11월 10일 교수신문 기사(<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898>) 및 2015년 4월 한국대학신문 기사(<http://www.campus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78>) 참조. 한국대학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6년에 시범평가 후 2017년부터 전면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

##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 인 쇄 | 2015년 11월

| 발 행 | 2015년 11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2층

| 전 화 | (02) 2125-9642 | F A X | (02) 2125-0922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 ISBN | 978-89-6114-434-6 93370